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22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서천호·박덕흠·서명옥

이만희 · 최보윤 · 정성국

정점식 • 서지영 • 조은희

박충권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·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167조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	②
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	
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	
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<u>2025년</u>	<u>2030년 1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면제한다.	<u> 2월 31일</u>
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	③
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	
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	
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	
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	
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	
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	
면허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	<u>2030년 12월 31일</u>
지 각각 면제한다.	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	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	관련 감면 등) ①
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	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	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	
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	
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	

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・영어자금・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저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식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(「농

2030년 12월 31일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② (현행과 같음) 세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
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과세기준일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② (생략)
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

<u>2030년 12월 31</u>
<u>일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<u>2030</u>
<u>년 12월 31일</u>

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	
로 한다.	